

제14차 CODEX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 회의결과보고

(The fourteenth session of the Codex Coordinating Committee for Asia)

권우정 / 보건복지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연구위원

1. 서 언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Codex Coordinating Committee for Asia, 이하 CCASIA)는 6개 지역조정위원회(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남미 및 카리브해, 근동, 북미 및 남서태평양)중 하나로써 아시아지역에서 통용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설정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총회, 집행이사회 및 각 분과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하기 전에 동 지역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의견조율이 가능하여 회원국의 각종 검토의견이 개진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 대응방안 수립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동 회의는 아시아지역국가만을 위한 회의로 아시아국가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본 분과의 업무분장 이외의 것이라도 논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아국의 의견을 관찰하거나 검토시 아시아 회원국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동 위원회를 이용하여 폭 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협력을 통하여 아국의 의견을 해당 분과에 개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14차 CCASIA 회의는 2002년 9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13차 CCASIA에서 만장일치로 우리나라가 아시아지역조정국으로 추천받아 2003년 7월, 제26차 총회에서 최종 선임되어 우리나라 최초로 제주도에서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는 2004년 9월 6일부터 5일간 제주도에서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16개의 회원국, 3개의 참관국, 국제기구 및 비정부단체 등에서 104명이 참석하였다.

주요한 의제로는 지역조정위원회의 업무분장 등 제반사항 검토, Codex 관련 FAO 및 WHO 활동보고서, 식품규격 및 규정을 위한 능력배양, 인삼, 된장 및 고추장 규격초안, Codex 규격승인을 포함한 식품관리 및 식품위생문제 관련정보, Codex 및 국가수준의 규격설정작업에 소비자의 참여 및 지역조정관 임명 등으로 자세한 의제목록은 다음과 같다.

결론적으로, 동 회의결과로써 우리나라가 차기 아시아지역조정국을 연임하게 되어 2006년경 제

15차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CCASIA)를 우리나라 통하여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
 라에서 개최하게 되었으며, 인삼, 된장 및 고추장 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규격 설정 등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동 회의를

표 1. 회의의제

의제 번호	의 제	관련문서
1	의제 채택 (Adoption of the Agenda)	CX/ASIA 04/1
2	25차, 26차, 27차 총회(특별) 및 51차, 52차(특별), 53차, 54차 집행이사회에서 제기한 사안 (Matters Arising from the 25th (extraordinary), 26th and 27th Sessions of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and the 51st, 52nd (extraordinary), 53rd and 54th Sessions of the Executive Committee) 지역조정위원회 검토(Review of the Regional Coordinating Committees) - 정부 의견 (Governments Comments)	CX/ASIA 04/2 CL 2002/26-ASIA CX/ASIA 04/2-Add.1
3	Codex 규격 설정을 위한 제안서 검토 (Consideration of the Proposals for Codex Standards - 3단계에서 의견수렴 (Comments at Step 3)	CX/ASIA 04/3 CX/ASIA 04/3-Add.1
4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관련 FAO 및 WHO 활동 보고서 (Report on Activities of FAO and WHO Complementary to the Work of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X/ASIA 04/4
5	식품규격 및 규정을 위한 능력배양 (Capacity Building for Food Standards and Regulations)	CX/ASIA 04/5
6	Codex 규격승인을 포함한 식품관리 및 식품위생문제 관 련 정보 및 보고서 (Information and Reports on Food Control and Food Safety Issues Including Acceptance of Codex Standards - 회원국 보고 (Reports by Member Countrs)	CL 2004/10-ASIA CX/ASIA 04/
7	Codex 및 국가수준의 규격설정작업에 소비자의 참여 (Consumer Participation in Food Standards Setting at the Codex and national Level - 회원국 보고 (Reports by Member Countries)	CX/ASIA 04/7
8	지역조정관의 지명 (Nomination of the Coordinator)	CX/ASIA 04/8
9	기타사업, 향후작업과 차기회의 일시 및 장소 (Other Business, Future Work and Date and Place of Next Sessio	
10	보고서 채택 (Adoption of the Report)	

2. 주요논의결과

1) 제25차, 제26차, 제27차 총회와 제51차, 제52차, 제53차 및 제54차 집행이사회에서 제기한 사항

○ 추적성 (Traceability/product tracing)

인도 대표는 제27차 총회에서 채택된 추적성 (traceability/product tracing) 정의에 대해 언급하면서 국가 및 국제 차원에서 안전하지 않은 식품 (unsafe food)의 원활한 리콜제도가 이미 존재함을 언급하고, 식품 수출입 검사·인증제도분과위원회 (CCFICS)에서 추적성 적용 원칙을 위한 설정작업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추적성을 시행할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추적성은 가공 식품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하며 1차 생산품 및 가공품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다른 대표들은 현 단계에서 추적성의 적용가능한 범위에서 1차 생산품을 제외토록 권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광우병(BSE)과 같은 일련의 비상 상황을 경험하면서 추적성이 1차 생산 수준에서 부터 적용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 식품안전을 위한 위해분석원칙(초안)

인도 대표는 일반원칙분과위원회에서 식품안전위해분석원칙(초안)을 검토할 경우 사전예방원칙은 포함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등 CCASIA의 권고사항을 제안하였다. 이미 24차 총회에서는 사전예방원칙을 동 원칙(초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결정이 있었으며,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및 기술적 제약사항을 고려해야 함을 피력하였다. 생태학적 및 환경학적 조건이 위해평가절차

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며, 위해평가절차를 통해 확인된 위해를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위해관리조치는 식품안전의 관점으로 부터 요구되는 사항보다 국제교역상 제약 및 불공정한 교역 장벽을 발생시켜서는 아니된다고 지적하였다.

○ 기타 사항

CCASIA는 지역조정위원회가 Codex 체제내에서 각 지역의 견해를 총회에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Codex 사무국은 지역조정위원회의 매년 개최는 주최국 및 Codex 사무국 뿐만 아니라 모든 참여국의 비용적인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총회의 매년 개최로 인해 Codex 회의 계획에 대한 기간여유가 없음을 지적하고, 지역조정위원회를 매년 개최할 경우, Codex 회의를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2) 인삼, 발효콩제품 및 고추장규격 초안검토

2-1) 인삼규격초안(Proposed Draft Standard for Ginseng Products (N01-2004))

제14차 CCASIA는 제27차 총회에서 동 규격이 신규 작업으로 승인되었음을 상기함. 한국에서 인삼제품규격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의견 수렴을 위해 3단계로 동 규격초안을 공람한 바 있다.

○ 일반적인 사항

- 일부 대표는 자국의 법령체계에서 인삼 제품이 기능성 식품(functional food)이나 임상

용식품(medical products)으로 간주 및 규제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식품으로 사용되는 인삼 제품만을 논의 대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함.

○ 규격 조항별 검토사항

- Section 1: 범위
 - CCASIA는 동 규격이 식품이나 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인삼 제품에 적용되고,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새로운 문구를 추가하기로 동의하였다.
- Section 2: 설명
 - 중국 대표는 화기삼(*P. quinquefolius* L.)과 전칠삼(*P. notoginseng* Burk)이 순수 인삼종(genuine ginseng)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 대표는 제27차 총회에서 동 규격을 신규 작업으로 승인하면서 다양한 인삼종을 포함시킬 것을 전제로 승인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총회결과에 따라 동 사항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여러 의견을 교환한 이후, CCASIA는 인삼의 2개의 종을 square bracket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 Section 3. 필수성분 및 품질인자
 - Section 3.3.1(d)와 3.3.2(e)와 관련하여, 동 규격이 *Panax ginseng* C.A Meyer로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만 한정할 경우, Rg1 확인이 동 조항의 목적에 충분히 부합한다는 이해와 함께 Rb1과 Rf 문구를 square bracket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 제27차 총회에서 Sampling에 대한 Codex 일

반 지침으로 대체되었으므로 CCASIA는 Codex 포장식품에 대한 시료채취 계획(Sampling Plans for Prepackaged Foods)(AQL-6.5) 대신 시료채취에 대한 Codex 일반 지침(Codex General Guideline on Sampling)이 언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 Section 7. Labelling

- 표시조항의 일부분으로써 제품은 의료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과 특정 집단에만 이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조항을 동 section 맨 앞부분에 삽입하기로 합의함. 특정집단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보다 필요하므로 맨 마지막 조항은 square bracket으로 유보하기로 합의하였다.

- Section 8. Methods of Analysis and Sampling

- 시료채취에 관한 Codex 일반 지침서(Codex General Guidelines on Sampling)를 section 8.1에서 언급하기로 합의하였다.

- Annex C (Identification of ginsenosides [Rb1, Rf,] Rg1)

- 동 annex의 제목 및 문서에 Rb1 및 Rf를 square bracket 처리 및 삽입하여 수정하였다. ginsenoside를 TLC 및 HPLC를 모두 사용하는 것 보다는 2개의 방법중 한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서문 조항을 수정하기로 합의하였다.

○ 결정사항

- CCASIA는 제28차 총회에서의 논의를 위해

동 규격초안을 5단계로 상정하기로 결정하고, 향후 동 규격설정시 국제규격으로써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CCPFV)에서 검토하기로 하였다. 표시조항,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과 관련한 조항은 각각 식품표시분과위원회(CCFL)와 분석 및 시료채취분과위원회(CCMAS)로 회부하기로 합의하였다.

2-2) 발효콩제품규격초안(Proposed Draft Standard for Fermented soybean Products(N02-2004)

CCASIA는 제27차 총회에서 동 규격초안을 신규 작업으로 승인하였음을 상기하였다. 동 규격초안은 한국에서 작성하였으며, 의견수렴을 위해 3단계로 공람한 바 있다. 한국 대표는 작업 문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규격 초안을 소개하였다. 한국 대표는 동 규격초안에서 동일한 분류의 제품을 보다 많이 포함할 수 있도록 “된장(Doenjang)”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였음을 언급하였다. 다수 대표들은 아시아지역에서 통상적으로 유통되는 여러 다수 발효콩제품을 다루기 위해서는 동 규격 초안의 범위를 보다 포괄적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언급하였다. 일부 대표들은 규격 초안에 포함된 식품 첨가물 목록이 다소 제한적이며, 다른 식품첨가물이 목록에 추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결정사항

CCASIA는 한국을 중심으로 한 전자작업반에서 동 규격초안 재작성을 위해 2단계로 반려하기로 결정하였다. 동 작업반은 아시아지역의 모든 국가가 참여가능하며,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및 태국이 동 작업반의 참여의

사를 표명하였다. 동 규격초안의 재작성은 2006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수정된 규격은 차기 CCASIA 회의 전에 의견수렴을 위해 3단계로 공람하기로 하였다.

2-3) 고추장 규격초안(Proposed Draft Standard for Gochujang (N03-2004))

CCASIA는 제27차 총회에서 동 규격초안이 신규 작업으로 승인된 것임을 상기하였다. 동 규격초안은 한국이 작성하였으며, 의견수렴을 위해 3단계로 공람한 바 있다. 한국 대표는 작업 문서에 포함된 내용과 같이로 규격 초안을 소개함. 한국 대표는 고추장 제조시 콩은 선택원료로써 사용되므로 규격초안 제목에서 “Hot Pepper Fermented Soybean Paste”라는 용어를 삭제하였음을 언급하였다. 다수 대표들은 고추장에 대해서만 규격의 설정을 지지하고, 기타 유사하지만, 다른 제품들은 동 규격의 범위에서 명백히 제외하기로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CCASIA는 총회에서 신규작업으로 승인시 “non-fermented hot pepper products”는 제외하였음을 상기하였다.

○ 규격 조항별 검토사항

- Section 1: 범위
 - CCASIA는 현 조항의 마지막 부분에 동 규격은 주요 성분으로써 고춧가루가 포함된 chilli paste 또는 chilli sauce products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문장을 추가하기로 합의하였다.
- Section 2: 설명
 - 고춧가루 및 기타 원료가 발효후 첨가되는 생산방법을 고려하기 위해서 section 2.1

(제품정의)을 수정하기로 합의하였다.

- Section 3 : 필수성분 및 품질인자
 - 일본 대표는 선택원료(section 3.1.2) 목록에 발효 조미료(fermented seasoning), 동물성 및 야채 추출물(animal and vegetable extracts) 및 가수분해 단백질(hydrolyzed protein)을 추가할 것은 제안하였다. 기타 대표 및 참관인들은 소비자들은 종종 고추장에 동물성 원료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만약 동물성 원료를 사용할 경우에 존재여부를 식품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CCASIA는 square bracket으로 선택 원료로써 “fermented seasoning”과 ”hydrolysed vegetable protein”만 추가하기로 합의하였다.
- Section 4, 식품첨가물
 - 일본 대표는 Section 4.3 (향미증진제)에 다수의 식품첨가물을 추가해 줄 것을 제안하였으나 현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 Section 6 중량 및 측정방법
 - Section 6.1.1 (최소충전)과 관련하여, 중국 대표의 요청하에 CCASIA는 표시 중량이 1,000g 이하인 제품의 허용오차를 20g에서 15g으로 수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표시 중량이 1,000g ~ 5,000g인 제품의 경우 제품 실중량을 표시량의 98% 이상이 아닌 98.5% 이상으로 수정하기로 동의하였다.
- Section 8, Methods of Analysis and Sampling
 - CCASIA는 전체 문서를 통틀어서 동 규격

초안에 Codex Sampling Plans 대신 Codex General Guidelines on Sampling을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에 합의하였다.

○ 기타 사항

- 방글라데시 대표의 지지하에 태국 대표는 오염물질 조항이 동 규격 초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언급하고, 통상적으로 식품별규격의 형식을 확인하여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하였다.

Codex 사무국은 오염물질 조항이 식품별 규격에 때때로 포함됨을 지적하였다.

특히, 단일 주원료로 구성된 제품에 적용할 경우, 사례별로 관련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이와 같은 조항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잔류농약분과위원회, 식품첨가물 및 오염물질분과위원회에서 개발한 최대허용기준(maximum limit/level)과 총회에서 채택된 최대허용기준이 식품별 규격에 오염물질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는 것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CCASIA는 오염물질 조항을 현 단계에서 규격 초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 결정사항

- CCASIA는 고추장규격초안을 차기 총회까지 4단계로 유지하고, Section 3.1.2 (선택성 원료)와 Section 4.3 (향미 증진제)은 향후 의견수렴을 위해 3단계로 반려하였다. CCASIA는 한국에서 Section 8.2 (분석방법)를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차기 회의전에 의견수렴을 위해 3단계로 공람하였다.

3)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관련 FAO 및 WHO 활동 보고서

○ Codex 및 회원국의 과학적 자문에 관한 FAO/WHO 자문절차에 관한 진행보고서

- WHO 대표는 최근에 개최된 FAO/WHO 워크샵(2004년 1월, 스위스 제네바) 및 최종 전문가협의회 또는 FAO 및 WHO의 특정 권고사항을 작성하기 위해 개최될 예정인 정부간회의를 포함하여 Codex 및 Codex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과학적 자문과 관련된 FAO/WHO에서 개최한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요약보고서를 소개하였다.

○ Codex 하부분과위원회로 부터의 과학적 자문 요청

- WHO 대표는 FAO 및 WHO는 CCASIA를 포함한 Codex 하부분과위원회로부터 과학적 자문에 대한 요청을 많이 받는다고 언급하고, 현재 FAO 및 WHO의 이용가능한 자원으로는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음을 언급하였다.

동 대표는 주요 문제점은 불충분한 자금이며, 각 회원국은 과학적 자문의 적절한 규정을 설정하기 위해서 FAO 및 WHO에 제공할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기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FAO/WHO 전문가 회의 및 협의회

- 기능성 식품에 관한 FAO/WHO Workshop

· CCASIA는 기능성 식품에 대한 FAO/WHO 워크샵이 CCASIA 회의가 개최되기 이전인 2004년 9월 6일에 개최되었음을 공지하였다. FAO 대표는 여러 국가의 기능성 식품의 현재의 상황에 관한 보고서

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음을 소개하고 동 워크샵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 한국 대표는 기능성 식품은 안전해야 하며 일반 영양소보다 더 많은 건강상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언급하고 기능성 식품의 안전성과 효능은 국제적으로 정립된 과학적 방법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한국 대표는 FAO 및 WHO에 이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지침서를 완성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FAO/WHO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WHO 대표는 2005년에 영양소 위해평가방법론에 관한 합동기술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임을 언급하였다.

- CCASIA는 항생제 물질의 비임상용 사용, 특히 성장 촉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사용된 결과로 초래되는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해 FAO, OIE 및 WHO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공지하였다. 기타 미생물 위험요소와 관련하여, CCASIA에서 즉석식품 중 *Listeria monocytogenes* 위해평가가 완료되었으며, 해산물중 *Vibrio spp*의 위해 분석 및 닭고기중 *Campylobacter spp* 위해분석 결과가 2004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임을 공지하였다. CCASIA는 또한 영아용 조제식에 함유 가능성이 있는 *E. sakazakii*에 대한 FAO/WHO회의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또한 노출량 평가와 식품중 미생물 위험의 위해 특성에 관한 FAO/WHO 지침서가 2004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임을 언급하였다. bivalve molluscs중 biotoxins과 관련하여, WHO 대표는 2004년 3월에 다수의 biotoxin의 최대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접근방법 및

이의 분석방법을 고려하기 위한 FAO / IOC / WHO 워크샵이 개최되었음을 언급하였다. CCASIA는 2003년 11월에 개최된 유전자변형동물유래식품에 관한 FAO/WHO 전문가 협의회가 개최되었음을 공지하였다.

- ADI/MRL 없는 잔류수의약품
- FAO 대표는 식품중 ADI/MRL 없는 잔류수의약품에 대한 FAO/WHO 합동 기술 워크샵이 개최(2004년 8월 24일~26일, 방콕) 되었음을 공지하고, 워크샵의 결과 및 권고 사항에 대해 보고하였다. 동 워크샵 결과, 원래의 평가결과가 문제가 되지 않거나, JECFA에서 ADI를 설정할 수 있으며, MRL을 제안할 수 있을 경우 JECFA에서 각 국가 및 지역에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현재 MRL이 설정되지 않은 잔류수의약품의 잠정 MRL 목록을 설정할 수 있음을 권고하였다. CCASIA는 개발도상국에서 중요하게 간주되는 잔류수의약품 및 국가에서 승인된 잔류수의약품의 경우 JECFA와 관련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MRL의 잠정목록에 추가하는 자문절차를 거쳐 평가가 가능함을 공지하였다.
- 태국 대표는 CCASIA에게 ADI/MRL 없는 잔류수의약품의 검출로 야기될수 있는 무역 문제를 상기하였다. 동 대표는 수입국가에서 채택한 분석방법은 잔류수준에 대한 위해평가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종종 매우 낮은 검출수준을 요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공식 실험실의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동 사안에 대한 규제체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함. 인도 및 인도네시아 대표는 태국 대표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하

였다. 인도 대표는 CCRVDF의 작업을 지원할 수 있는 향후 작업반을 구성할 것을 제안함. 인도 및 인도네시아 대표는 작업반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함.

- 과학적 자문 제공과 관련된 기타 FAO 및 WHO 활동사항
- WHO 대표는 소규모 영세업체의 HACCP 적용에 대해 지침 문서를 작성하였음을 CCASIA에 공지하였다. CCASIA는 IAEA와 공조하여 핵 응급상황 대응준비에 관한 기술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WHO는 또한 의의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사능의 위기상황대응센타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음을 공지하였다. CCASIA는 우수농업규범(Good Agricultural Practices) 지침서 개발을 위한 전략을 권고하기 위해 2003년 10월과 2003년 11월에 잔류수의약품의 공공보건을 토대로 한 공동체에 관한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였음을 언급하였다.

4) 식품규격 및 규정을 위한 능력배양

FAO 및 WHO 대표는 가까운 시일내에 수행 예정인 지역적 또는 국가적 능력배양활동에 관한 요약보고서를 포함하여 이전에 개최된 지역 조정위원회 이후로 FAO 및 WHO에서 아시아지역에서 부분 또는 전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활동과 관련된 현재 진행중의 국제적 및 지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능력 배양활동에 대해 소개하였다. 대부분의 능력 배양 활동은 FAO 및 WHO와 합동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때때로 기타 국제기구와도 합동으로 수행되고 있다. 특히, CCASIA는 차기 제2차 식품안전규제자 글로벌 포럼(the Second Global Forum of Food Safety

Regulators, GF2) (2004년 10월 12일~14일, 태국 방콕)이 개최될 예정이며 동 포럼과 관련하여 여러 부대행사가 계획중임을 공지하였다. WHO 대표는 WHO의 지역 사무소(Regional Offices)와 각 국가 대표들을 통해 모든 회원국들이 국제 식품 안전규제네트워크(International Food Safety Authorities Network, INFOSAN)를 위해 1개 또는 그 이상의 접촉창구를 지정하도록 요청한 바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WHO는 27차 총회에서 채택된 식품안전응급상황시 정보교환을 위한 Codex 원칙 및 지침서 작성을 목적으로 응급접촉창구를 구축한 바 있다.

5) Codex 규격승인을 포함한 식품관리 및 식품안전문제 관련 정보 및 보고서

식품관리 및 식품위생문제 관련 정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네팔,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및 참관국에서 여러 관련사항에 대해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식품관련행정조직, 관련 법률체계 등에 대해 보고하고, 특히 미승인된 불법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의 확인에 대해 보고함. 또한,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동 물질에 대한 아시아 정보망 구축에 기여할 의사가 있음을 발표하였다.

6) Codex 및 국가차원에서 식품규격설정시 소비자 참여

자국 법률 제·개정 및 Codex에 소비자의 참여와 관련하여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스리랑카가 발표하였으며, 소비자단체인 IACFO와 CI가 소비자의 Codex 회의 참여증

진활동에 대해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및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를 통한 법률 제정 개정 및 정책결정과정 등에 시민단체의 참여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소비자단체의 Codex 참여를 장려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7) 지역조정관의 지명

우리나라가 차기 지역조정관을 연임하기로 합의하고, 제15차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를 2006년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지역조정관은 아국이 포함된 아시아 지역을 대변자로서 아시아 지역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조정하고 아시아지역 국가의 권익보호와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를 개최·주재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향후 제28차 총회(2005. 7)(이태리, 로마)에서 아시아지역조정관으로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8) 기타 사업

- 냉장, 비발효콩제품 (Refrigerated, non-fermented soybean products)
 - 제13차 CCASIA에서 중국이 냉동비발효콩 제품에 대한 신규규격제정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으며 태국의 공조하에 중국이 project document를 수정하여 56차 집행이사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 미생물 위해관리 수행을 위한 원칙 및 지침서 초안 (Proposed Draft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the Conduct of Microbiological Risk Management)
 - 인도 대표는 동 문서와 관련하여 위해분석의 작업원칙 적용범위, 사전예방원칙의 용어 삭제, MRL 선정시 투명한 절차 등에 대해서 지적하였다.